1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○ 기업의 수시·경력 채용 확대,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

*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[중기중앙회, '21.4월] : ①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(73.7%), ② 구활지원금·생활비지원(59%), ③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(52.9%) 順

○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

청년 일경험 주요 내용

- **(법적근거)**
 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5조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)
 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8조의2(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) 등
 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)
- **(지원대상)** 15세 이상~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- **(지원방식)** 프로그램 운영기관, 참여청년,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

□ **(목적)**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·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

* (일경험 정의) 청년이 취·창업 전 미리 직무 관련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또는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

□ **(참여대상)** 15세 이상 ~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
*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
*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. 다만,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

직무분야 사전분류(안)

구분	세부 직무(예시)
경영·사무	기획, 인사, 행정, 총무, 노무 등
금융·회계	금융, 회계, 재무, 보험 등
영업·해외영업	제품·서비스 영업, 영업관리, 온라인 판매, 해외영업 등
광고·마케팅	마케팅, 홍보, 광고 제작, 영상 콘텐츠 기획 등
IT	컴퓨터시스템 전문가, 웹·소프트웨어 개발자, 데이터전문가 등
연구·R&D	경제, 인문·자연과학, 화학, 전기, 원자력, 제약, 바이오, 식품공학 등
생산·제조	생산·품질관리, 생산, 제조, 전기, 설비, 조립, 가공 등
공공행정	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
기타	보건·의료, 디자인, 미디어, 미용, 음식,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/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

◎ 참여기업 자격

○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*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비영리단체, 비영리법인 등 선정 가능

*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. 다만,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

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
② 「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제도 운영규정」 및 「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제도 운영규정」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③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기업

◎ 참여기업 제한조건

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
*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
②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*
*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감상실업, 무도장업, 복권발행업 등. 다만, 숙박업 중 호텔업(55101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, 휴양콘도 운영업(55103,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)은 가능

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

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* *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

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
* 공표안일자로부터(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) 1년간 참여 제한

⑥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⑦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*
* '22년~'23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
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